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. 11. 16.
행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. 11. 10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11. 12.

다. 상정일자: 제286회 제1차 정례회(폐회중)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(2026. 11. 16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청년정책과장 이임수】

가. 제안이유

○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기존 재정지원 대상에 '기업체'를 추가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○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위탁 대상에 기존 비영리법인·단체 외

에 기업체를 추가함(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).

○ 조례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(안 제4조제4항).

다. 참고사항

○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, 「청년기본법」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○ 입법예고 : 2026. 10. 15. ~ 2026. 11. 4.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1 조례의 개정 취지

○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,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위탁 대상을 기업체까지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연계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청년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.

2 주요 개정내용

○ (안 제4조제3항)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계획 수립의 중복을 줄이고 청년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.

○ 다만, 기본계획 통합 시에도 현행 조례에서 정한 청년일자리 관련 필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, 계획 수립주기와 추진실적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○ (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)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위탁 대상을 기존 비영리법인·단체에서 기업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,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다만, 기업체 선정 시 사업 수행능력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재정지원의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 요건과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.

3 법적 타당성 검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, 「청년기본법」 및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,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의 범위에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기본계획 통합에 따른 기존 조례상 의무 이행 여부와 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업 위탁의 적법성은 관계 법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4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통합 수립과 기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,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년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기본계획 통합에 따른 청년일자리 관련 필수사항 및 연도별 추진실적 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, 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 위탁 시에는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